

論 文

## 레이다 리플렉터의 법적 문제에 대한 일고찰

김 인 현\*

### 제1. 서 론

레이다 리플렉터(레이다 반사기)는 레이다 전파가 어떤 물체에 부딪치고 반사되어질 때 그 물체의 영상을 더욱 선명하게 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물체이다. 소형 어선이나 어망의 부위등에 이를 장착하면 레이다를 장착하고 있는 선박에서는 더 크고 선명한 영상을 얻게 됨으로써 물체의 위치파악과 피항의 판단에 도움을 얻게된다.

2000년도부터 우리 나라 연안의 선박충돌사고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즉, 상선과 상선과의 충돌사고는 대폭적으로 감소하고있으나, 상대적으로 어선과 상선과의 충돌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어선들의 크기가 작고 레이다 화면상에 제대로 나타나지 아니하여 상선이 어선의 존재를 간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도 상당하다. 상선에서의 어선과의 충돌사고를 보면 특히 무중인 경우에 상대선을 레이다의 중심근처에서 잃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연안에 설치된 어선의 그물의 존재를 몰라서 그물과 충돌을 함으로써 2차적으로 어선과 부딪치게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2001년의 크리스호 사건).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레이다 리플렉터를 개발하여 어선과 그물에 장착하면 사고를 방지할수 있다고 본다.

### 제2. 레이다 리플렉터의 법적 지위

#### 1. 국내법

##### (1) 공법상의 지위

레이다 리플렉터의 공법상의 지위란, 행정법상으

로 선주에게 레이다 리플렉터의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해상공법상 레이다 리플렉터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이 되므로, 선박안전법과 해상교통안전법에 이러한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 1)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제2조의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있는 선박설비기준이 있다. 현행설비기준에는 레이다 등에 대하여는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레이다 리플렉터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2)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에는 레이다의 사용에 대하여는 규정이 있으나, 레이다 리플렉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레이다 리플렉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레이다 리플렉터의 수동적인 성격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상교통안전법의 규정들은 적극적으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해기사들이 취하여야 할 항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레이다 리플렉터는 수동적으로 자신의 크기를 타방에게 크게 나타내도록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의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여기에 레이다 리플렉터가 포함되는지가 의문이다. 이 조문은 선박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선박에 정착되어 있는 여러 수단을 이용하라는 것이므로,<sup>1)</sup> 상대선박에 설치되어야 할 레이다 리플

\* 목포해대 교수, 선장/법학박사

랙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2) 사법상의 지위

사법상의 지위로는 선박충돌사고 등에 레이다 리플렉터가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미치는 영향을 논하면 될 것이다. 예컨대, 소형어선이 레이다 리플렉터만 장착하였다면 상선등이 어선의 존재를 쉽게 파악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어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어선 선주는 적어도 과실상계를 당할 것이다.<sup>2)</sup> 과실상계는 행위자에게 의무가 부과된 다음에야 논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과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이다 리플렉터를 장착할 의무가 어선의 선주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상법 제787조에 의하면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하여 감항능력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sup>3)</sup> 레이다 리플렉터등 항해장비는 그중에서 운항능력에 해당할 것이다. 상법상 운항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해야 할 것으로는, 우수한 선원의 선임감독, 해도의 보급, 레이다등의 장착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레이다 리플렉터를 그 장비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학자는 없다.<sup>4)</sup> 그러므로, 현행법상으로는 그러한 의무는 부과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의무는 사법상, 즉 상법상 장착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고, 해상공법(선박안전법)상 부과된 선박설비기준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

## 2. 국제법

항해장비와 같이 항행안전과 관련된 국제법규로

는 1974년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이하 SOLAS)와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조약들은 우리 나라가 비준하였으므로 헌법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sup>5)</sup> 그러므로, 이들을 국내법화한 선박안전법이나 해상교통안전법에 이들의 개정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들 조약이 그대로 우리 나라에 적용된다.

### (1) SOLAS

MSC 25차 회의의 결과를 근거로 1973년 11월 20일 제8차 총회에서 채택된 Res. A. 277(VIII)은 총톤수 100톤 이하의 국제항해와 그 접속 연안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레이다 리플렉터를 부착하여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 뒤 MSC 36차 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1977년 11월 4일 제10차 총회에서는 Res. A 384(X)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레이다 리플렉터에 대한 권고안은 우리 법으로는 권고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고 해석된다.

### (2)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위 해상교통안전법과 동일하다.

## 제3. 최근의 입법동향

### 1. IMO

2000년 11월 27일에서 12월 6일까지 열린 제73차 MSC회의에서 SOLAS 제5장 개정안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 개정안은 묵시적 수락절차를 거쳐

1) 김인현, 해상교통법강의(다솜출판사, 2001), 63면.

2)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한다.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는 민법 제763조의 준용규정에 따라서 불법행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곽윤직, 「채권자론」(박영사, 1992), 749면.

3) 상법 제787조(감항능력주의의무)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 사용인이 발항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2.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보급 3. 선창,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4) 이기수, 「보험법·해상법학」(박영사, 2000), 425면.

5)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한다.

2002년 7월 1일 국제적으로 발효할 예정이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레이더 리플렉터의 설치에 대한 것이다. 제5장 제19조는 2002년 7월 1일 이후 건조되는 모든 선박으로서 150톤 미만의 모든 선박은 9 GHZ 및 3 GHZ 레이더로 탐지가 가능한 레이더 리플렉터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19.2.1.7.).<sup>6)</sup>

이것은 중요한 변화로서 SOLAS가 적용되는 선박은 레이더 리플렉터의 장착이 의무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을 바꾸어 이 규정이 우리 나라 선박이나 우리 나라 영해등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 2. 캐나다

캐나다 상선법(충돌예방규칙) 제40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길이 20미터 미만(less than 20 meters) 혹은 비금속물질로 주로 건조된 선박은 수동 레이더 리플렉터(Passive radar reflector)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제4. SOLAS 제5장 개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 1. 우리 나라의 의무

SOLAS 74본문 제1조는 협약의 체결국은 본 협약과 부속서의 규정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국내의 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체결국인 우리 나라(비준일 1980년 12월 31일)도 SOLAS의 내용의 실시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겠다.

한편, 우리 나라 선박안전법 제16조(조약규정의 적용)는 「선박의 감항성과 인명의 안전에 관한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SOLAS의 개정내용이 발효되었음에도 선박안전법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있는 경우에는 SOLAS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제5장 개정안에 나와있는 항해장비들에

대하여, 150톤 미만의 국제항해선박과 500톤 미만의 국내항해선박 그리고 어선에 대하여는, 주관청이 협약에서 요구되는 설비들을 적의 조정하여 탑재할 수 있도록 각 주관청에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우리 나라도 레이더 리플렉터 장착에 대하여는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다.

### 2. 적용선박의 범위

SOLAS 제1장 일반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은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만 적용되나(제1조 a항), 각 장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의 종류는 각 장에서 더 명확히 정하여지며 또한 이들 규정의 적용범위는 각 장에서 제시된다(제1조 b항). 또한 이 규칙은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어선과 총톤수 500톤 미만의 화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조 a항). 그런데, 제5장은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군함과 진적으로 북미의 5대호와 그에 접속 및 부속하는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을 제외하고, 모든 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제1조). 그러므로, 비록 제1장에 따르면 어선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제5장의 경우는 모든 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에게도 적용된다고 하겠다.

제1장 제2조는 체결정부의 기국적선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하므로, 외국어선에 대하여 레이더 리플렉터의 장착을 강제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제5. 입법화 방안 및 결어

### 1. 선박설비기준

레이더 리플렉터가 국내의 소형어선에도 설치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러한 내용이 규범화될 수 있는 장은 기존의 선박설비기준이다. 레이더 리플렉터는 이번 SOLAS 개정에서 추가된 장비들과 함께 선박설비기준에 삽입하면 될 것이다.

6) 정부대행검사부, 한국선규, 2000년 SOLAS 개정에 대한 소개, 4면(www.krs.kr/sta /kukje 2000-01.html).

## (1) 해사공법상 지위

설비기준은 규범의 명칭이 기준으로 되어 있어, 일반 국민에 대한 효력이 없이 내부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규칙인지 혹은 비록 명칭은 그러하나 일반 국민을 상대로 만들어진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가 문제된다.

법규명령(시행령과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이 있고, 고시는 일반적으로 행정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본다.<sup>7)</sup> 그러나, 비록 행정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이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sup>8)</sup> 선박설비기준의 내용을 보면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안전을 위한 선박설비장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므로, 비록 형식은 고시되 되어있으나,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 (2) 효력

설비기준은 선박의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항행장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선박설비기준은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를 장착하지 않는 선박소유자는 선주로서 안전운항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될 것이다. 해사행정법 혹은 해사형법상 과태료나 혹은 벌금부과의 처분을 받을 것이다.

## (3) 관련 규정

선박설비기준은 제94조에 항해용 레이더, 제95조

에 플로팅 설비 그리고 제96조에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레이더 리플렉터는 레이더의 보조장치이므로 제95조의2(레이더 리플렉터)로 하면 될 것이다.<sup>9)</sup>

## 2. 선박안전기술협회의 검사기준

해양수산부가 행하여야 하는 선박안전검사업무는 선박안전법에 의거하여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검사기술협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다. 그 시설기준은 기술협회가 독자적인 기준을 만들수는 없는 것이고 선박설비기준에 구속되므로, 개정되는 선박설비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의 기준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 3. 결어

레이더 리플렉터의 소형선박에의 설치는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조약에서는 이의 실시를 체약국 정부에 넘김으로써, 이를 부착하는 것은 정부의 몫으로 넘어왔다. 입법화의 방안으로서는 선박안전법 제2조의 고시형태인 선박설비기준에 레이더 리플렉터를 삽입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어선에 대하여는 선박검사기술협회에서 선박검사를 하면서 이의 부착을 철저히 시행하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검사증서를 발급하지 않게 되면, 그 장착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7) 김동희, 「행정법(I)」(박영사, 1999), 147.

8) 김동희, 상계서, 153면.

9) 총톤수 10톤 미만의 선박에 적용되는 소형선박의구조및설비기준에서는 제72조 제2항에 레이더 리플렉터를 삽입하면 될 것이다.